교원인사위원회규정

제정 : 1995.04.01
개정 : 1998.05.01
개정 : 1999.10.18
개정 : 2008.12.17
개정 : 2011.06.30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2.07.22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19.07.10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8.05.01., 1999.10.18., 2008.12.17., 2011.11.22., 2021.12.01>

제2조(조직) 인사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7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.<개정 2011.06.30.>
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도중 본 대학교를 퇴직하거나 면직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위원직을 상실한다.

제5조(기능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1. 총장이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강사를 임명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명 제청 동의에

관한 사항 <개정 2011.06.30., 2012.07.22., 2019.07.10.>

2. 총장이 부총장 등의 보직을 임명 제청하고자 할 때 보직 임명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12.01.>

3.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21.12.01.>

4. 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1.06.30.>

② 「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」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임명 제청·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
2.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4.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회의소집)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총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결)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8조(회의록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전문대학에서 대원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